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8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16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- 가. 「측량법」, 「수로업무법」 및 「지적법」이 폐지되고, 3개 법이 통합된 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「측량법」 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
- 나.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등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근거 법령 개정(안 제1조)
- 1) 「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」를 통합된 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」로 개정
- 나.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(안 제3조)
- 1) 「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」를 「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」로 정비
- 다.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에 따라 정비 등(안 제8조 등)
- 1) 「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」를 「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」등으로 정비

## 3. 개정근거

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1. 10. 13. ~ 2011. 11. 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(2011.11.10)

라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측량·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”로, “운영등에 관하여”를 “운영 등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각1인”를 “각 1명”으로, “7인이내”를 “7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람”으로,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고,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명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”을 “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직무등”을 “직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회의 및 의사)”를 “(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7일전까지”를 “7일 전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구관할구역내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내(이하 “관할 구역”으로 한다)”로 하며,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“지명중”을 “지명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참여 할”을 “참여할”로 한다.

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,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의견청취등)”을 “(의견청취 등)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구동의 소속 공무원”을 “관련 공무원”으로 하고, “청취등”을 “청취 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수당)”을 “(수당 등)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예산의 범위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15일이내에”를 “15일 이내에”로 하고, “시지명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운영등에”를 “운영 등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</b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구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</p> <p>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지명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3조(위원장의 직무등)</b>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	<p><b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</b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.....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..... 운영 등에 .....</p> <p><b>제2조(구성)</b>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</u>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.....각 1명..... 7명 이내 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..... 각 호의 사람 ....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....</p> <p>... 3명 .....</p> <p>3. 그 밖에 .....</p> <p>... ..</p> <p>④ .....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.....</p> <p>.....</p> <p><b>제3조(위원장의 직무 등)</b>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~ ③ (생략)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조(회의 및 의사)</b>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<u>7일전까지</u>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p>	<p><b>제5조(회의)</b> ① ..... ..... ..... <u>7일 전까지</u> ..... ....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<b>제7조(기능)</b>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구관할구역내</u>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</p> <p>3. <u>기타</u>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</p>	<p><b>제7조(기능)</b> ..... 각 호 ..... 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내(이하 “관할 구역”으로 한다)</u>..... .....</p> <p>3. <u>그 밖의</u> .....</p>
<p><b>제8조(지명의 조사)</b> ①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<u>구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<u>지명중 복합호칭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)</u>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8조(지명의 조사)</b>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<u>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,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..... ..... <u>지명 중</u> ..... ....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</p>	<p>④ ..... ..... ..... 참여할 .....</p>
<p>제9조(의견청취등)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련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의견청취 등) ..... ..... 관련 공무원 ..... ..... 청취 등 .....</p>
<p>제10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수당 등) ..... 예산의 범위에서 .....</p>
<p>제11조(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기타 중요한 사항</p>	<p>제11조(회의록) ..... 각 호 ..... ....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그 밖에 .....</p>
<p>제12조(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보고) .....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.....</p>
<p>제13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3조(시행규칙) ..... 운영 등에.....</p>